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

제1장 학비장학금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비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자격) ① 장학생의 자격은 성적이 우수한 대학원 전업생으로서 정규석사, 정규통합 또는 정규박사 학위과정 입학생으로 한다. 다만, 반액장학생 중 의과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인하대병원 재직자 중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간호사, 임상강사, 진료교수)은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원 전업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 1.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 2.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하는 사람
 - 3. 졸업예정학기 수업일수 1/4선 이후 조기취업자
 -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등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별표3]의 요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3. 8. 1.>
- 제3조 (선발기준 및 종류) 장학생 선발기준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학금은 등록금을 기준으로 전액장학금과 보조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의무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2. 의과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을 학기당 30명을 반액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의학과 학생을 최대 27명까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제4조**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석사과정 4차, 박사과정 4차, 통합과정은 8차 학기까지로 한다.
- **제5조** (자격상실) ①제1차 학기에 휴학(입대휴학제외)을 할 때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 ② 반액장학생 중 의과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의 경우 인하대병원을 퇴직할 때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 제6조 (선발시기 및 방법) 입학 전형 시 선발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제7조 (장학생 의무)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1. 전체 학기 통산 평점평균 석사 3.50, 박사 3.75 이상
 - 2. 제3조에서 정한 의무사항
 - ② 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장학금 신청 시에 "장학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장학생은 연구실적물이 있는 경우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및 연구실적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지정기한내에 제출한다.
- 2.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 **제8조** (지도교수 의무) 해당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제3조 1호 의 장학생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장 조교장학금

- 제9조 (목적) 이 내규는 교수의 교육을 돕기 위한 대학원생(이하 "조교장학생" 이라 한다)을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제10조 (종류) 대학원 조교장학생은 교수의 강의 및 연구를 보조하는 학습조교(이 하 "TA"라 한다), 학부실험을 보조하는 실험조교(이하 "LA"라 한다) 및 학과사무실에서 학사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조교(이하 "OA"라 한다)로 나눈다.
- **제11조** (자격) ① 대학원 전업생으로서 석사 6차 학기, 박사 8차 학기, 통합 12차 학기 이내의 학생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조교장학생에 한하여 최대 4학기 이내에서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다.
 - 1. 학부의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교과목의 실험실습을 보조하는 LA
 - 2. 수강생수가 대규모인 학부의 교양필수 교과목의 TA
 - 3. 강의 및 실습을 병행하는 학부의 교양필수 교과목으로서 학점수 보다 강의시간이 많은 교과목을 지원하는 TA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원 전업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 1.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 2.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하는 사람
 - 3. 졸업예정학기 수업일수 1/4선 이후 조기취업자
 - ④ 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등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별표3]의 요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3. 8. 1.>
- 제12조 (이중수혜) ① 조교장학생은 TA, LA, OA중 어느 2가지 이상을 이중으로 수혜하지 못한다.
 - ② 조교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할 수 있다.

- 1. 학비장학금(등록금 85%이하 장학금)
- 2. 정석국제장학금(등록금 70%이하 장학금)
- 3. 학생회간부장학금
- 4. 연구장학금
- 5. 교직원자녀장학금<신설 2022. 2. 28.>
- ③ 제11조 2항에 해당하는 조교장학생은 장학금 이중수혜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장 학습조교(TA) 및 실험조교(LA)

- 제13조 (선발인원) 매학기 선발할 대학TA와 LA의 총 인원은 교무처에서 수요인원을 산정하여 기획처에 통보하면 기획처는 예산관계를 검토한 뒤 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 제14조 (선발방법) 학생지원처는 매학기 TA 및 LA의 학과별 배정인원을 각 학과 에 통보하고 각 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은 해당학과 또는 전공과정에 소속된 재학생 중에서 각 학과에 배정된 인원에 해당하는 TA 및 LA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학생지원처에 통보한다. 다만, 학과가 요청할 경우 다른 학과에 소속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제15조 (수혜기간) TA 및 LA는 매학기 선발하며 선발된 TA와 LA의 수혜기간은 1학기로 한다. 학생이 등록하는 동안 여러 학기를 연속하여 TA 또는 LA로 선발될 수 있다.
- 제16조 (장학금 지급) ① TA 및 LA에 대한 조교장학금의 한 학기 구체적인 액수는 기획처장 및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학생지원처장이 결정한다.
- 제17조 (임무) ① 조교장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조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조교장학생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② 조교장학생은 당해 학기말에 "조교 업무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관리) 조교장학생 근무 부서장 또는 소속 교수는 당해 학기동안 조교장학 생의 근무상태를 관리 감독한다.
- 제19조 (장학금 반환) 조교장학생이 질병, 휴학,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받은 조교장학금 중 근무한 기간에 해 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 학생지원처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20조 (실명원칙) 다른 학생의 이름으로 조교장학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조교장학생이 취소되고 관계된 자들은 모두 향후 조교장학생으로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제4장 사무조교(OA)

- 제21조 (배정인원) 매 학기별로 기획처에서 정한다.
- **제22조** (선발방법) 해당 부서장은 학생지원처의 요청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발 하다.
- 제23조 (근무기간) 한 학기 단위로 주당 20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 제24조 (장학금지급) 장학금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다.
- 제25조 (임무) 사무조교는 학과에서 학사업무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제26조** (중도해임) 소속 부서장은 사무조교의 근무상태가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5장 인하비전장학금

- 제27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인하비전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 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8조** (자격) ① 대학원 전업생으로서 정규박사 학위과정 입학생 또는 정규통합학위과정 5차 재학생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원 전업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 8. 1..>
 - 1.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 2.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 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하는 사람
 - 3. 졸업예정학기 수업일수 1/4선 이후 조기취업자
 -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등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별표3]의 요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3. 8. 1.>
- 제29조 (선발기준) [별표 I]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성적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 제30조 (선발인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연간 72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제31조**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은 등록금 전액으로 하며, 지급기간은 박사과 정 4차, 통합과정은 8차 학기까지로 한다.
- 제32조 (휴학) 제1차 학기에 휴학(입대휴학제외)을 할 때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 제33조 (선발시기 및 방법) 장학생은 입학 전형시 선발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제34조 (장학생 의무)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1. 전학기 통산 평점평균 3.75 이상
 - 2. 입학시 지정한 장학생 의무사항
 - ② 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장학금 신청 시에 "장학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장학생은 연구실적물이 있는 경우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및 연구실적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지정기한내에 제출한다.
- 2.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 **제35조** (지도교수 의무) 해당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제34조 1 항의 장학생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회간부장학금

- 제36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생회간부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7조 (자격) 대학원 학생회 간부로 한다.
- 제38조 (선발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1명) : 정규등록금의 3분의 2 상당액
 - 2. 부회장(1명) : 정규등록금의 2분의 1 상당액
 - 3. 총무(1명) : 정규등록금의 2분의 1 상당액
 - 4. 국장(7명) : 실험조교2(LA2) 장학금액
- 제39조 (지급기간) 학생회 간부 임기 동안으로 한다.
- 제40조 (이중수혜) 본 장학금은 기타 다른 장학금과의 이중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제7장 교직원장학금

- 제4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교직원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2조 (자격)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인사 담당부서를 통해 본 대학원 의 학위과정으로 입학 또는 재학에 대한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교직원으로 한다.<신설 2022. 2. 28.>
- 제43조 (선발인원)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2% 이내로 한다.
- 제44조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은 등록금 반액으로 하며, 지급기간은 석사과 정 4차, 박사과정 4차, 통합과정 8차 학기까지로 한다. 다만, 직원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추천된 자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2. 2.>
- **제45조** (지급제한) ① 제1차 학기에 휴학(입대휴학제외)을 할 때 수혜자격이 상실 된다.
 - ② 직장 퇴사할 때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 제46조 (선발시기 및 방법) 입학 전형시 선발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제47조 (장학생 의무) 장학생은 전학기 통산 평점평균이 석사는 3.50 이상, 박사는

3.75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장학금

- 제48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연구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9조** (자격) ① 대학원 전업생으로서 정규석사 4차, 정규박사 6차, 정규통합 10차이내 재학생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원 전업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 1.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 2.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하는 사람
 - 3. 졸업예정학기 수업일수 1/4선 이후 조기취업자
 -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등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별표3]의 요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3. 8. 1.>
- **제50조** (선발기준) 연구비 수혜실적이 우수한 교수가 추천한 지도학생을 우선 선 발한다.
- 제51조 (선발인원) 학기당 최대 200명까지 선발하되, 지도교수가 추천할 수 있는 장학생 수는 1명으로 하고, 연구비 수혜실적이 우수한 지도교수인 경우 2 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 제52조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은 150만원으로 하며, 지급기간은 한 학기로 하고, 재학 중 연속하여 수혜받을 수 있다. 다만, 장학금 수혜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 (선발시기 및 방법) 매 학기 시작 전에 선발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제54조** (장학생 의무) ① 장학생은 [별표Ⅱ]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학기 말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및 연구실적물을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 (지도교수 의무) 해당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별표 Ⅱ] 의 장학생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장 전문간호사과정장학금

제56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

- 의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7조 (자격) 보건복지부렁 전문간호사과정 입학자격을 충족하여 합격한 자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교) 및 실습교육협약체결기관 근무자
 - 2. 기타 간호학과 전공주임의 추천에 따라 대학원장이 지급 결정한 자
- **제58조** (선발기준) 간호학과 석사과정 전문간호사과정 입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다.
- **제59조** (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노인전문간호사과정 연간 5명, 가정전문간호사과정 연간 10명으로 한다.
- **제60조**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은 등록금 반액으로 하며, 지급기간은 석사과 정 4차 학기까지로 하다.
- 제61조 (선발시기 및 방법) 입학 전형시 간호학과에 추천에 의하여 선발하며 대학 원장이 결정한다.

제10장 기금장학금

- **제6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기금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3조 (용어의 정의) 기금장학금이란 발전기금 또는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기관 또는 출연자 (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가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4조** (장학생 선정) ① 출연기관에서 학과와 인원을 지정한 경우 장학생은 주임 교수의 추천으로 학생지원처장이 결정한다.
 - ② 출연기관에서 학과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생수의 학과간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지원처장이 대상 학과를 선정하고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최종 선정한다.
- **제65조** (지급기준 및 방법) ① 본 장학금은 출연기관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출연기관에서 별도의 지급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매학기초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한다.
- **제66조** (이중수혜) 본 장학금은 출연기관의 의사에 따라 다른 장학금과의 이중수 혜를 허용할 수 있다.
- **제67조** (지급제한) 출연기관에서 장학생의 자격 및 의무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배되었을 경우 수혜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11장 재직자장학금

- 제68조 (목적) 이 내규는 석사·박사·통합과정 직장 재직자를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9조 (종류) 장학생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산학연장학금: MOU 체결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 2. 동문사랑장학금: 직장 재직자 중 본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 출신 박사과정 진학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3. 더배움장학금: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 해당되는 직장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제70조 (선발시기 및 방법) 입학 전형시 선발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제71조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석사과정 4차, 박사과정 4차, 통합과정은 8차 학기 까지로 하다.
- 제72조 (장학금 수혜신청 방법) ① 재직자 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입학 전형시 재직자 대상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직자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다.
 - ② 제69조 1항에 해당하는 MOU 체결기관은 입학원서 접수시작일 이전에 대학원으로 협약체결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제73조** (지급제한)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 1. 제1차 학기에 휴학(입대휴학제외)을 할 때
 - 2. 직장 재직자가 퇴사할 때, 단 퇴사 후 30일 이내 재입사한 경우에는 수 혜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1.>
 - 3. 산학연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입학 시 재직한 MOU 체결기관에서 퇴사할 때, 단 퇴사 후 30일 이내 MOU 체결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수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1.>
 - ②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한다.
 - 1. 장학금의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2.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등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별표3]의 요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3. 8. 1.>
- **제74조** (장학생 의무) 장학생은 전학기 통산 평점평균이 석사는 3.50 이상, 박사는 3.75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75조** (산학연장학금 자격) ① 산학연장학금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대학원과 협약 체결된 학·연 협동연구기관 재직자 2. 본교와 MOU 협약이 체결된 기관 재직자
 - ② 학부 및 석사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제76조** (산학연장학금 선발기준) 협약기관의 본교 기여도, 사회 평판도 등을 고려 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 **제77조** (산학연장학금 지급액 및 선발인원) 장학생 지급액 및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지급액	선발인원
200만원/학기	
150만원/학기	연간 50명
100만원/학기	

- **제78조** (더배움장학금 자격) 더배움장학금 지원자는 직장 재직자로서 학부 및 석 사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제79조 (더배움장학금 선발기준) 선발인원 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 **제80조** (더배움장학금 지급액 및 선발인원) 장학금 지급액은 학기당 150만원으로 하며, 장학생 선발인원은 연간 100명 이내으로 한다.
- 제81조 (동문사랑장학금 자격) 동문사랑장학금 지원자는 본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 출신 박사과정 진학자로서 학부 및 석사 평점평균 3.5이상인 자이어야한다.
- **제82조** (동문사랑장학금 선발기준) 선발인원 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 **제83조** (동문사랑장학금 지급액 및 선발인원) 장학금 지급액은 학기당 200만원으로 하며, 장학생 선발인원은 연간 10명으로 한다.

제12장 외국인장학금

- **제84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외국인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5조 (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정석국제장학금'과 '글로벌비전장학금'으로 나누며, 선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장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86조** (지급대상) 장학금은 학칙시행세칙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87조** (선발시기 및 방법) 장학생은 입학 전형시 선발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제88조** (지급기간) 석사과정 4차 학기, 박사과정은 4차 학기, 통합과정은 8차 학기까지로 하다.
- **제89조** (정석국제장학금) 입학시 어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장학금 은 등록금을 기준으로 100%, 70%, 50%, 30% 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9.13.>

- 제90조 (글로벌비전장학금) ① 입학 허가자 및 통합과정 4차 재학생 중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며, 장학금은 등록금을 기준으로 전액을 지급한다.
 - ② 글로벌비전장학생은 2개 학기에 한하여 수업 또는 연구 보조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 제91조 (지급 중지 및 회수)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할 수 있다.
 - 1. 장학금 지급 중지 및 회수: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때
 - 나. 장학금의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
 - 다. 해당 장학금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때
 - 2. 장학금의 지급 중지: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지도교수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지급 중지를 요청할 때
 - 나. 전 학기 통산 평점평균 3.75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제13장 공로장학금

- **제92조** (목적) 이 내규는 공로장학금 장학생 선발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신설 2021.3.5.>
- 제93조 (선발대상) 본교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공로장학생 추천위원 회에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신설 2021.3.5.>
- 제94조 (선발시기 및 절차) 매 학기 공로장학생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신설 2021.3.5.>
- 제95조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은 공로장학생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급기간은 석사, 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 이내로 한다. 단, 재직 중인 자는 재직기간에 한한다.<신설 2021.3.5.>

제14장 창업꿈나무장학금

- 제96조 (목적) 이 내규는 창업꿈나무장학금 장학생 선발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21.7.12.>
- 제97조 (선발기준) 본교 창업활동에 특별히 성과가 있는 자로서 창업지원단 창업 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신설 2021.7.12.>
- 제98조 (선발시기 및 인원) 매 학기 시작 전 창업지원단 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4명이내로 선발하여 총장이 결정한다.<신설 2021.7.12.>

- 제99조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은 창업지원위원단 창업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급기간은 석사, 박사, 통합과정 정규차수 이내로 한다.<신설 2021.7.12.>
- 제100조 (지급제한) 기업을 폐업하거나 창업한 후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자격이 상실된다.<신설 2021.7.12.>

제15장 교직원자녀장학금

- 제10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교직원자녀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22. 2. 28.>
- 제102조 (적용대상) 대학원 정규등록 석사, 박사 또는 통합 학위과정생으로 자녀 등록일 기준 2년이상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교직원"이라 함은 전임직 교직원 및 정규직 급여호봉표에 의해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직 교직원을 말하며, 연봉계약직으로 임용된 교직원(비정년 트랙 교원 포함), 연구원, 조교, 사무보조원 및 일용직 등은 제외한다. 다만, 본교 체육감독(코치)직 및 카운슬러는 포함한다.<신설 2022. 2. 28.>
- 제103조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은 등록금 반액으로 하며, 지급기간은 석사 과정 4차, 박사과정 4차, 통합과정 8차 학기까지로 한다.<신설 2022. 2. 28.>
- 제104조 (이중수혜금지) 수혜자가 교내 타 장학금을 받게된 경우 유리한 것으로 택일할 수 있으나 이중수혜는 할 수 없다.<신설 2022. 2. 28.>
- 제105조 (지급기간 연장) 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 명예퇴직,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당시 재학중인 직계자녀에게는 지급기간까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신설 2022. 2. 28.>
- 제106조 (신청절차) 신입생은 입학 전형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이전 학기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2. 2. 28.>
 - 1. 장학금 수혜신청서(소정양식)
 - 2. 재직증명서
 -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제107조** (장학생 의무) 장학생은 전학기 통산 평점평균이 석사는 3.50 이상, 박사는 3.75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28.>

부 칙(2020, 10, 28,)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일로부터 학비장학금 지급 내규, 조교장학금 지급 내규, 인하비전장학금 지급 내규, 학생회간부장학금 지급 내규, 교직원장학금 지급 내규, 연구장학금 지급 내규, 전문간호사과정장학금 지급 내규, 기금장학금 지급 내규, 재직자장학금 지급 내규, 외국인장학금 지급 내규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3. 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신설)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1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90조 제2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12조 제5호, 제42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는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1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78조, 제80조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1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89조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13.)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11조, 제12조, 78조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8조는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2. 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44조는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2조, 제11조, 제28조, 제49조, 제73조, 별표 3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장학생 선발기준

계열	학부 및 대학원 성적	연구실적	합계
공학, 이학, 의학	50	50	100
인문·사회, 예·체능	70	30	100

1. 학부 및 대학원 성적

계 열	점 수	
공학, 이학, 의학	학 부	() / 4.50 × 30
० भ, भभ, भभ	석 사	() / 4.50 × 20
인문ㆍ사회, 예ㆍ체능	학 부	() / 4.50 × 42
인군ㆍ사외, 엑ㆍ세등	석 사	() / 4.50 × 28

※ 성적은 4.50 만점 환산 점수

2. 연구실적

평가계열 평가항목	공학계열	이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ㆍ체능계열	의학계열
논문					
국내공인학술지1)	10	10	15(20)	15(20)	10
국제공인학술지2)		SCI(E)	: 30 / SSCI · A	&HCI: 60	
국제수준학술지3)	15	15	15	15	15
기타외국학술지4)	10	10	10	10	10

※ 공동저술에 따른 저자수 인자(본인 포함)

주저자, 교신저자, 2명	100%
3명	70%
4명	50%
5명	25%
6명 이상	20%

※ 환산점수 계산은 전체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아래와 같이 하여 지원자 점수 환 산함

계 열	전체 지원자 최고점수
공학, 이학, 의학	50점
인문·사회, 예·체능	30점

※ 각주 해설

1)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확정된 경우다음과 같이 국내공인학술지로 인정한다.

구 분	공학, 이학, 의학 계열	인문ㆍ사회, 예ㆍ체능 계열
등재학술지	10점	20점
등재후보학술지	10점	15점

- 2) SCI(E), SSCI, A&HCI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1. SCI(E) 30점. SSCI 및 A&HCI 60점
 - 2. 초록만이 게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3) SCOPUS(article 등 한국연구재단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정)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 중 연간 게재된 논문의 주저자 분포가 5개국 이상으로 본교 교수업적평가 인정 기준에 따른다. 다만, 초록만 게 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4)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와 SCOPUS에 등재된 국제학술대회논문 집을 인정한다.
- 3. 교수당 장학생은 연간 신규 2명까지 선발한다.
- 4. 계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별표 2】장학생 의무사항

본 의무사항은 장학생의 연구능력을 극대화하여 졸업생의 연구실적을 분야별로 타교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 최고 일류 대학원 졸업생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가.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1) 박사과정

① 졸업요건으로 다음사항 중 한 종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SCI 논문	국내학술지	국내특허	국제특허
의무사항	1편(주저자)	2편(주저자)	1건(주발명자)	1건(주발명자)

단, 건축공학과는 아래의 조건도 인정한다.

	국제 현상설계 당선작 또는	국내 현상설계 수상권 입상 또는
	국제 초대전, 기획전에 출품	국내 초대전, 기획전에 출품
의무사항	1건	2건

- ② 게재 승인된 논문도 ①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③ SCIE도 SCI에 포함시킨다.
- ④ SCI와 SCIE를 제외한 국제수준논문은 국내학술지 논문으로 간주한다.
- ⑤ 주저자 및 주발명자가 아닌 경우 논문편수 및 특허건수는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⑥ 위 ①항의 의무실적 중 1/3을 투고논문 또는 특허신청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⑦ 위 ①항중 어느 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SCI논문수) + (국내학술지 논문수/2) + (국내특허) + (국제특허×3) ≥ 1

⑧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제외한다.

(2) 석사과정

① 졸업요건으로 다음 사항 중 한 종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SCI 논문	국내학술지	국내특허	국제특허
의무사항	1편 이상 투고	1편 이상 투고	1건 이상 출원	1편 이상 출원
의무사형	또는 게재	또는 게재	또는 등록	또는 등록

단, 건축공학과는 아래의 조건도 인정한다.

		국내 현상설계 수상권 입상 또는
	국제 초대전, 기획전에 출품	국내 초대전, 기획전에 출품
의무사항	1건	1건

- ② 공동저자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③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제외한다.

나. 이학계열

(1) 박사과정

- ① 졸업요건은 공학계열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의 80%로 한다.
- ② 졸업요건 이외의 모든 사항은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연구장학생 의무규정을 준수한다.
- ③ 수학과, 통계학과의 경우 논문 및 특허항목 점수의 2배를 적용한다.

(2) 석사과정

① 졸업요건으로 다음 사항 중 한 종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SCI 논문	국내학술지	국내특허	국제특허
의무사항	1편 이상 투고	1편 이상 투고	1건 이상 출원	1편 이상 출원
의구사 영	또는 게재	또는 게재	또는 등록	또는 등록

- ② 공동저자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③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제외한다.

다.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1) 박사과정

① 졸업요건으로는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점수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평가 기준표> 참조	25(10)점

(2) 석사과정

- ① 연구실적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 ② 단, 소속 학과의 대학원 행정업무 수행에서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당 4시간 내외의 범위에서 행정업무에 협조한다.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평가 기준표>

- 1. ()안의 점수는 국제공인(수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국내·외 특허 및 국내공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또는 국제 및 국내학술저서로 얻어야 하는 점수이다.
- 2. 공동저술에 따른 저자별 점수의 배분은 논문류의 경우 단독 100%, 2인 공저 70%, 3인 공저 50%, 4인 공저 30%, 5인 공저는 20%로 하며 공동저자수에서 지도교수는 제외한다.

평가 단위 평가 항목	사회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생활과학대학	
논문 및 특허					
국내공인학술지1)	15(20)	15(20)	15(20)	15(20)	
기타국내학술지2)	5	5	5	5	
국제공인학술지3)	30(20/50)	30(20/50)	30(20/50)	30(20/50)	
국제수준학술지4)	20(10)	20(10)	20(10)	20(10)	
기타외국학술지5)	10	10	10	10	
대학논문집6)	5	5	5	5	
특허(국외/국내)7)	30/15	_	_	30/15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7)	5	_	_	5	
저서8)					
국내학술저서9)	20(30/10)	20(30/10)	20(30/10)	20	
국제학술저서10)	30(50/15)	30(50/15)	30(50/15)	30(50/15)	
전문교재(대학이상)11)	20	20	20	20	
1・2종도서 (초/중/고)	5	5	5	5	
번역서12)	10	10(20)	10(20)	10	
편저서	5	5	5	5	
기타저서 (일반용)	2	2	2	2	
학술활동					
국내학술대회논문발표13)	2	2	2	2	
국제학술대회논문발표14)	5	5	5	5	
창작발표회/전시회15)	_	20/10/5	20/10/5	20/10/5	
해설/총설/기고16)	3	3	3	2	
논평 및 서평17)	3	3	3	_	

※ 각주 해설

-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교육부A 등급", "교육부B등급"으로 확정된 경우에 국내공인학술지로 15점을 인정한다. 다만, 이공계열(기초의학 포함)을 제외한 계열의 경우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20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2) 국내의 학술단체 및 공공기관(비영리 공익법인 포함)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로 한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의 경우에는 해당학과에서 심의하여 기타국내학술지로 인정할 수 있다.
- 3) SCI, SSCI, A&HCI에 의해 공인된 국내·외 학술지로 30점을 인정한다. 다만, 초록만이 게재된 경우 20점까지 인정하며, Impact Factor가 20.000이상인 논문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할 경우 50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SCI Expanded List,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 중 연간 게재된 논문의 저자 분포 (주저자 분포)가 5개국 이상으로 해당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는 20점을 인정한다. SCI 저널 (SCI Expanded 포함)의 Supplement에 초록이 게재된 경우에는 10점까지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국제수준학술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5)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논문발표 순위 20위권 이내의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에 한하되 전공분야에 따라 대상국가를 20개국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소속학과가 정한다.
- 6)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1998년까지 심사제도 없이 게재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연간 10점까지 인정)
- 1. 외부 심사제도
- 2. 대학논문집 1권당 게재논문편수가 최소 8편이상
- 3. 타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로만 저자가 구성된 논문수가 전체 50%이상
- 7) 특허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특허권자가 인하대학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특허와 국외특허를 중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국외특허는 G7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기타국가에서 취득한 특허는 국내특허에 준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의 경우에는 기술평가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점수를 인정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의 경우 실용신안에 준하여 인정한다.
- 8) 제1판에 한한다. 개정판의 경우에는 새로운 장(chapter)이 추가되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용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제1판 해당점수의 30%를 인정할 수 있다.
- 9)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저서의 학술적 비중에 따라 20점과 30점 배점을 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 다만, 한권의 저서에 1개 또는 그이상의 개별적인 장(chapter)을 저술한 경우 10점까지 인정하며, 국내단행본 게재 논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 10) 국제학술저서는 30점을 인정하나, 국외유수의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전체 단

- 본 저술인 경우 해당학과의 심사를 거쳐 50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장(chapter)의 저술인 경우 15점까지 인정하며, 외국단행본 게재 논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 11) 학술저서와 전문교재의 구분은 저서의 주제, 내용의 독창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속학과가 정한다.
- 12) 문과대학과 사범대학의 경우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학술 또는 창작물의 단행본을 완역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10점, 해당전문분야에 대한 학·예술적 기여도가 탁월한 경우에는 20점으로 한다.
- 13) 국내의 등록된 학술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과 프로그램 등을 첨부하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연간 5점까지 인정)
- 14) 최소 3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초록과 프로그램 등을 첨부하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연간 10점까지 인정)
- 15) 창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로 발표했을 경우에만 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미술분야의 경우 발표회의 형태에 따라 공인된 개인전과 국제전 출품 및 입상, 국제미술행사(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등) 출품, 공공미술 창작품(지하철 미술작품 등)은 20점, 공인된 초대전과 국내 공모전(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공예대전)의 특선 이상, 환경미술 창작품은 10점, 그룹전 및 일반 단체전·국내공모전 입선, 전문잡지·연구지 소개작 등 기타 발표된 창작품은 5점을 인정한다.
- 2. 음악 및 무용 분야의 경우 국내외 공인 독창회, 독주회, 국내외 공인 연주회의 지휘 또는 창작곡의 초연, 개인창작연구발표회는 20점, 국내외 공인 협연 및 발표, 공인된 국내외 무용단체에서의 연구발표회는 10점, 공인된 연주회의 중주 및 반주, 공인된 개인무용 발표회, 국가기관이 주최한 무용제 참가는 5점을 인정한다.
- 3. 건축학 분야의 창작품에 대하여는 국내·외 현상설계 당선작은 20점, 수상권 입 상작은 10점, 전문잡지 소개작 등 기타 창작품은 5점을 인정한다.
- 4. 문예 및 미학 분야의 창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제도가 있는 국내·외 저명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 소설집, 희곡집, 평론집의 경우 20점, 편집위원제도를 갖추고소정의 고료를 지급하는 국내·외 유수의 잡지에 발표된 5편 이상의 시와 70매이상의 창작물의 경우 10점, 그 밖의 창작물의 경우 5점을 인정한다. 또한 한국어 창작물의 외국어 번역도 이에 준한다.
- 5. 창작발표회/전시회 의상디자인분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국제유명 국공립 미술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초대개인전, 국내외 공인 개인전 및 일반화랑 초대개인전 그리고 국제전 출품 및 입상, 국제미술행사(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등) 출품은 20점, 국내외 일반화랑 개인전은 10점을 인정한다.
 - ·단체전의 경우 국제유명 국공립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기획초대전, 국내외 공 공기관의 기획초대전은 10점, 일반단체전 (심사제도 없는 회원전, 동문전 등)은 5 점 (단체전은 5인 이상이 참가한 전시회), 공모전의 경우 국제공모전 입상이상은 20점, 국내공모전 특선이상은 10점을 인정한다. 공모전이 전시를 겸하는 경우

상한 작품에 대하여 전시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

- ·공연예술중의 의상디자인 중 의상상 수상의 경우 국제유명 공연예술제는 10점, 국내유명 공연예술제는 5점, 국제, 국내대회에서 발표되었거나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하고 공인된 장소에서 공연된 초연작품의 의상에 대해서는 의상의 비중과 창의성에 따라 5점/3점을 차등부여한다.
- 16) 각주 처리가 된 논문성 해설, 총설 및 기고에 한한다.(연간 5점까지 인정)
- 17) 국내공인 학술지, 국제공인 학술지, 국제수준 학술지 및 단행본에 발표된 경우에 한한다. (연간 10점까지 인정)

【별표 3】장학생 예외사유 인정 요청서

	담	당	팀장	부처장	처장
결 재					
재					

서	요청서	인정	예외사유	수혜자격	장학금	제 목
---	-----	----	------	------	-----	--------

	학 과	과 정	석사 • 박사 • 통합차
신 청 인	학 번	구 분	
	성 명	연락처	

내	사유(전일제)	□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 졸업예정학기 수업일수 1/4선 이후 조기취업자
용	사유(재직자)	□ 퇴사 후 30일 이내 재입사
0	사유발생기간	202 ~ 202
	증빙자료	

장학금 수혜자격 예외를 위와 같이 요청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지도교수 (서명)

인하대학교 학생지원처장 귀하

붙 임	장학금 수혜자격 예외사유 인정 증빙서류
-----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번호	개정일자	번호	개정일자
1	2021. 3. 05	16		31	
2	2021. 7. 12	17		32	
3	2022. 2. 28	18		33	
4	2022. 8. 11	19		34	
5	2022. 9. 13	20		35	
6	2022. 12. 13	21		36	
7	2023. 2. 2.	22		37	
8	2023. 8. 1.	23		38	
9		24		39	
10		25		40	
11		26		41	
12		27		42	
13		28		43	
14		29		44	
15		30		45	